

#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0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06월 21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재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다음 요금조정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현재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상·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후단 <u>신설</u> >	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u>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이”를 “시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상수도 요금

4. 하수도 사용료

제11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<u>서울특별시</u>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<u>시장이</u> 결정·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11조(심의안건제출) ① <u>서울특별시</u>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시가</u>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상수도 요금</u></p> <p>4. <u>하수도 사용료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심의안건제출) ①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